

의안검토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립사업비 추가
출자(증자) 동의안
3. 안 건 요 지 : 별 첨
4. 검 토 의 견 :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7년 7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희배

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립사업비 추가 출자(증자) 동의안

본 동의 안은 2007년 6월 29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7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하여 대전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유학생 역조현상의 완화와 지역대학의 국제교육 경쟁력 향상 및 신입생 부족난 해소를 위해 시와 지역의 8개 대학이 공동출자하여 외국인유학생 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해 제1차(2004. 6. 29)로 86억원 중 50%인 43억원을 출자 동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추진 중이나,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품 구입비가 부족하여 추가로 출자 동의 의결을 얻어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 출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해 시와 8개 대학이 86억원을 공동출자(시 43, 8개 대학 43)하여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나. 86억원 중 공사비 83억원과 비품구입비 3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비품구입비가 7억원이 소요되어 부족액중 시가 부담해야 할 130백만원을 추가 출자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다. 비용부담근거 : 외국인유학생기숙사추진 협약서 제6조 제2항에 건립사업비는 공사비, 설계비, 집기류 구입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시 50%, 8개 대학 50% 부담

3. 검토의견

○ 본 동의 안은

지방대학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시가 지역대학과 공동으로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 사업비를 출자하여, 엑스포과학공원 부지 내에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를 건립중이나,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가 부족하여 추가로 출자하려는 것임.

○ 본 동의 안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 의하여 지방공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자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서 건립중인 외국인 유학생기숙사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우리 시가 지역대학과 공동으로 사업비를 추가로 출자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